

## 2.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2. 13. 김제시장 으로부터 제출  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2. 15.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 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2. 17. 제82회김제시의회 정례회  
제1차자치행정위원회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총무과장 도인기)

#### 가. 제 안 이 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가 승인되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신설 승인
-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연장 승인
  - 당 초 : 2001. 11. 12 ~ 2003. 12. 31
  - 변 경 : 2004. 1. 1 ~ 2006. 12. 31
-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 신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,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가 승인되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문 ( 오인근 위원 )
  -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2003.12.31까지 한시운영하며, 폐지되는 벽골제관리사업소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시 상시기구로 환원한다. 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과 상충되는게 아닌가요?.
- 답 변 ( 도인기 총무과장 )
  - 유인물 5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부분 에 대하여도 개정하였습니다.

### 5. 토 론 요 지

- 특이사항 없음.

### 6. 심 사 결 과

-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찬성 5명, 반대 1명 기권 2명 으로 원안 가결.